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2. 7. .	
연 월 일	(제 회)	

국 립 학 교 설 치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순 애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7.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립대학 교명 앞에 ‘국립’을 부기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4조, 안 제3조[별표1], 안 제16조제9항)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합 승인('22.4월)에 따라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고, 통합대학 교명을 한경국립대학교로 하며, 국립전문대학(1교)인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삭제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조정(안 제9조제3항[별표6], 안 제9조제5항[별표8])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다. 국립대학 교명 앞에 설립 주체인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립대학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 대학 구성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재적 중인 학생 및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마. 다른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4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의 통합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대학 종류별 정원을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별표 1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명칭 앞에 국립을 부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를 “대학·교육대학에”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을 “학과를”로 하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을 “교육대학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9항 중 “한국복지대학교의”를 “한경국립대학교의”로 한다.

제3조 관련 별표 1 제1호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하

고, “제3호 전문대학”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6의 학교명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하고,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학교명	과·담당관
한경국립대학교	7

제9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학교명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하고,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학교명	행정실
한경국립대학교	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관련 별표 1,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6, 제9조제5항 관련 별표 8, 제16조제9항, 부칙 제4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경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한경대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의 재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한경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학 계 “18,526”을 “18,618”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655”를 “15,713”으로 하며, 조교 “2,834”를 “2,868”로 하고, “전문대학 계 92”를 삭제하며, “총장 1”을 삭제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7”을 삭제하며, “조교 34”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 신 설 >	제3조(명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별표 1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명칭 앞에 국립을 부기할 수 있다.
제5조(학교의 장) ① <u>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u>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제5조(학교의 장) ① <u>대학·교육대학</u> 에 ----- --- -----.
제6조(단과대학 등) ① (생략) ② 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u>학과를</u> , <u>전문대학에 학과를</u> 둘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학과를-----.
③~⑥ (생략) ⑦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 삭제 >
제7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u>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u>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제7조(부속시설 등) ① --- <u>교육대학을</u> ----- ----- ----- -----

현행	개정안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제14조(전문대학의 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② 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 ⑧ (생략) ⑨ <u>한국복지대학교의</u>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⑩ ~ ⑬ (생략)	----- ----- ----- <u>< 삭제 ></u>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한경국립대학교의</u>----- ----- ----- ----- -----. ⑩ ~ 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 (제3조 관련) 1. 대학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소재지</td></tr> <tr> <td><u>한경대학교</u></td><td>경기도</td></tr> </table> 비고 (생략) 1. (생략) 2. 공주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u>한경</u> <u>대학교</u>·한국체육대학교 및 한밭 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 3.~5. (생략) 3. 전문대학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소재지</td></tr> <tr> <td><u>한국복지대학교</u></td><td>경기도</td></tr> </table> [별표6] 대학의 부속시설 등과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 제3항 관련)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과·담당관</td></tr> <tr> <td><u>한경대학교</u></td><td><u>6</u></td></tr> </table> [별표8]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행정실</td></tr> <tr> <td><u>한경대학교</u></td><td><u>3</u></td></tr> </table>	학교명	소재지	<u>한경대학교</u>	경기도	학교명	소재지	<u>한국복지대학교</u>	경기도	학교명	과·담당관	<u>한경대학교</u>	<u>6</u>	학교명	행정실	<u>한경대학교</u>	<u>3</u>	[별표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 (제3조 관련) 1. 대학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소재지</td></tr> <tr> <td><u>한경국립대학교</u></td><td>경기도</td></tr> </table> 비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한경</u> <u>국립대학교</u> ----- ----- 3.~5. (현행과 같음) <u>< 삭제 ></u> [별표6] 대학의 부속시설 등과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 제3항 관련)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과·담당관</td></tr> <tr> <td><u>한경국립대학교</u></td><td><u>7</u></td></tr> </table> [별표8]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table border="1"> <tr> <td>학교명</td><td>행정실</td></tr> <tr> <td><u>한경국립대학교</u></td><td><u>2</u></td></tr> </table>	학교명	소재지	<u>한경국립대학교</u>	경기도	학교명	과·담당관	<u>한경국립대학교</u>	<u>7</u>	학교명	행정실	<u>한경국립대학교</u>	<u>2</u>
학교명	소재지																												
<u>한경대학교</u>	경기도																												
학교명	소재지																												
<u>한국복지대학교</u>	경기도																												
학교명	과·담당관																												
<u>한경대학교</u>	<u>6</u>																												
학교명	행정실																												
<u>한경대학교</u>	<u>3</u>																												
학교명	소재지																												
<u>한경국립대학교</u>	경기도																												
학교명	과·담당관																												
<u>한경국립대학교</u>	<u>7</u>																												
학교명	행정실																												
<u>한경국립대학교</u>	<u>2</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808